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검토 보고서

2023. 11. 29.(수)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욱자 의원 외 11명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오옥자 의원 외 11명
- 제안일 : 2023. 11. 17.
- 회부일 : 2023. 11. 20. (의안번호 : 23-178)

2. 제안이유

- 미래세대의 필수 덕목인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포구의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차별금지(안 제4조)
- 라. 지원사업의 범위 및 위탁(안 제5조 및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교육지원법」 제5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 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3. 11. 16. ~ 11. 21.(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오욱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 관내 학생의 효과적인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차별 없이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에서는 창의·인성 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및 다양한 체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창의·인성교육은 2009. 12. 교육부 발표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에서 등장한 개념이며 당시 교육부는 창의성과 인성교육(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교과활동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망라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 이는 교육부가 2023. 6.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을 넘어서 미래 핵심역량{6Cs : 인성(Character), 창의성(Creativity),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융합역량(Convergence),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을 키워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인성교육’을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한 점에서, 결국 창의와 인성은 공교육에 있어 지속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전략으로 창의성 신장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변화에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창의성은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발휘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인성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교육정책과	김정해 (8970)	임진아 (895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생략)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 제1항(예산의 지원)

-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교육정책과 김미성
연 락 처	02-3153-8953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인성교육진흥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8.]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각 급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2.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2023.4. 기준)

- 2023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액은 6,343,740천원, 지급액은 4,647,701천원으로
전체 보조금 중에서 약 5%정도가 창의·인성교육에 사용됨을 알 수 있음

연번	구분	신청내역	신청액 (천원)	지급액(천원)
1	초등	저학년 창의 전통 음악교육	10,000	10,000
2		신나는 창의·융합형 코딩수업	12,600	12,600
3		1인 1악기를 통한 예술적 감성 기르기	26,420	26,420
4		예술로 떠나는 독서여행	4,200	4,200
5		꿈끼 예술제	8,300	8,300
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오케스트라 동아리)	10,000	10,000
7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2,000	12,000
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3,000	3,000
9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오케스트라)	30,200	30,200
1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신북챔버오케스트라)	15,000	15,000
1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6,000	16,000
12		협력종합예술교육(연극)	8,000	8,000
1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3,000	23,000
14		창의인성워크북 제작비	6,000	6,000
15		창의적 체험활동	9,000	9,000
16		창의인성·진로교육 운영	17,700	17,700
17		글로벌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30,500	30,500
18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활성화	5,180	51,80
19		협력적 인성교육 프로그램	10,000	10,000
20	중학	창의인성수학	1,000	1,000
2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970	4,970
22		나도 예술가	7,700	7,700
23		감성충만 예술교실 운영	14,370	14,370
2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000	8,000
25		예술교육 오케스트라	5,000	5,000
26	고등	예(禮)로 서다	9,000	9,000
27		예술로 더하다	10,000	10,000
합 계			317,140	317,140

* 사업명 중에서 창의, 인성, 예술 등으로 검색한 결과

